

2026년도 2차 간호조무사 신규교육훈련기관 예비 지정·평가 시행 계획 공고

「간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2차 간호조무사 신규교육훈련기관
예비 지정·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I. 목적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조무사를 양성·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II. 근거

- 2015년 12월 개정된 「의료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현 「간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의무화 시행
- 신규교육훈련기관(2019년 1월 1일 이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교육과정 개시 이전에 ‘예비 지정·평가’를 받아야 함.

III. 주요 내용

- 「간호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IV. 평가 시행 기관

-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 (보건복지부 위탁, 이하 ‘평가원’이라 함)

V. 평가대상

- 간호조무사 양성기관(「간호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을 운영하고자 설립 등록 등을 마친 기관 또는 2026년 11월 전에 등록 예정인 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 「간호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청 설립인가를 ‘예비 지정·평가’로 간주하므로, 예비 지정·평가 대상 아님.
- 정규 교육과정을 1회 이상 운영한 기관은 ‘기존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대상이 되므로, 예비 지정·평가 대상 아님.

VI. 평가방법 및 절차

1. 평가방법

- 교육훈련기관 운영 전에 해당 기관의 교육 제공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 시행

구분	내용
평가방법	신규교육훈련기관 예비 지정·평가
평가목적	사전역량평가
효과	교육훈련생 국가시험 응시 가능
비고	예비지정 기간 만료 前, 정규 교육과정 1회 이상 운영 후 ‘기존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진입

2. 예비 지정·평가 절차



①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 10. 1.(목)~10. 16.(금) 17:00
- (신청방법)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시스템(<https://nee.kuksiwon.or.kr:8885/>)(이하 “지정·평가 시스템”) 내 ‘평가자료 입력 시스템’에서 신청
- * 신규교육훈련기관은 반드시 지정평가 시스템 메인 페이지(<https://nee.kuksiwon.or.kr>) 공지사항의 ‘회원가입 관련 안내’를 참고하여 [평가자료 입력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예비 지정·평가 신청

② 대상기관 선정

- (선정기준) 신청 기간 내 신청접수 완료된 신규교육훈련기관
- (선정일자) 2026. 10. 19.(월)

③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평가대상기관이 주체가 되어 평가 기준에 따라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하는 평가의 핵심과정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 (제출서류) 자체평가보고서 및 부록
- (제출기한) 2026. 11. 20.(금) 17:00까지
- (제출방법) ‘평가자료 입력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 * ‘평가자료 입력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자체평가보고서’ 메뉴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상세화면에서 관련 양식 작성 및 부록 업로드

④ 서면평가

- 평가단이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과정
 - * 평가위원 간, 평가단 간 일치도를 높이기 위하여 집합평가 방식으로 진행

⑤ 대표자 면담

-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자 면담을 진행하여 자체 평가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평가항목별 보유 역량 평가
- 필요시 대표자 면담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대표자 면담 일정은 추후 기관별 통보

3. 기관 부담 비용

- 기관당 750천 원
-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평가원의 안내에 따라 납부
 - * 대상기관 선정 시 발송한 공문을 통해 납부 방법 및 기한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 기준

<간호조무사 신규교육훈련기관 예비 지정·평가 기준>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1. 교육과정	1.1 교육훈련 과정 편성과 이수현황 및 운영	1.1.1 교육훈련과정 편성 및 이수현황	1. 교육훈련과정 편성* 2.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이수현황*
		1.1.2 이론교육 운영	1. 기초간호학 개요 교과내용 구성* 2. 보건간호학 개요 교과내용 구성* 3. 공중보건학개론 교과내용 구성* 4. 이론교육 교과목 운영
		1.1.3 실습교육 운영	1.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습시간* 2. 실습교육 운영
2. 인적자원	2.1 교육훈련생	2.1.1 교육훈련생 모집	1. 교육훈련생 모집의 적법성 2. 교육훈련생 모집 안내의 적절성
		2.1.2 교육훈련생 진로 및 취업지원	1. 상담 활동 2. 취업지원
	2.2 교·강사	2.2.1 교·강사 확보	1. 전임강사 확보 2. 전임강사 자격 3. 교·강사 자격
3. 재정 및 시설· 환경	3.1 재정 운영	3.1.1 재정운영 건전성	1. 재정 확보 2. 재정 적법성 확보
	3.2 교육시설· 환경	3.2.1 교육시설 확보	1. 교육시설 확보 2. 강의실 환경 3. 실습실 환경
		3.2.2 교육시설 관리	1. 교육시설 유지·관리 2. 교육시설 안전관리
	3.3 실습자원	3.3.1 실습기자재 확보 및 관리	1. 실습기자재 확보 2. 실습기자재 관리
		3.3.2 실습기관 확보 및 관리	1. 실습기관 확보(병·의원) 2. 실습기관 확보(병원급 의료기관)
3개	6개	11개	26개

주) 1. 표의 하단은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의 개수를 의미함.
2. *표시 지표에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충족 요건이 포함되어 있음.

5. 결과 판정

- 필수 충족요소: 3항목

(1.1.1 교육훈련과정 편성 및 이수현황, 1.1.2 이론교육 운영, 1.1.3 실습교육 운영)

- 판정 기준

- ① 예비지정: 항목충족률 60% 이상

- ② 지정불가: 항목충족률 60% 미만

- * 필수충족요건 미충족, 자체평가보고서 및 부록 내 허위 혹은 고의적인 오류 확인 시 항목충족률과 관계없이 '지정불가' 판정

6. 판정유형 및 기간

- ① 예비지정: 2년

- ② 지정불가: 국가시험 응시 제한

7. 예비지정 효과

-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정(조건부 지정, 예비지정 포함)'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8. 지정결과 공개

- 지정·평가 결과는 최종 보건복지부의 지정 승인 후 평가원이 피평가 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함.
- 지정기관명·판정결과·지정 기간 등의 결과는 일반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나, 피평가기관의 보호를 위해 '지정불가' 기관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음.

9. 이의신청 제도

-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피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원에서 정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
- 단, 이의신청은 ‘지정불가’ 기관에 한하여 허용
 - *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은 재평가가 아닌 평가 및 판정 과정과 결과가 규정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임.

VII. 사후 관리방안

1. 지정기간 중 지정내용 변경 시 보고

- 교육훈련기관은 지정기간 중 지정사항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기관명 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소재지) 변경, 시설 양도·양수, 교습 정지 명령 이상의 행정처분 등)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평가원에 보고* 해야 함.
- * 평가원에 보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훈련기관에 있음.

2. 지정취소 사유 (「간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정불가’ 기관의 재지정·평가

- 평가원 규정상, ‘지정불가’ 판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회차에 진행되는 예비 지정·평가에 재신청할 수 있음.
- 단, 신청 서류가 허위인 경우 「간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를 준용하여 ‘지정불가’로 판정하고 1년 진입 제한*을 두도록 함.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지정취소된 교육훈련기관은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지정·평가 재진입 가능

VIII. 예비 지정·평가 추진 계획

구분	2026년도 2차
신청접수 공고	2026년 10월 1일(목)
신청접수	10월 1일(목)~10월 16일(금)
자체평가 워크숍 (비대면, 동영상 시청)	10월 19일(월)~10월 26일(월)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10월 19일(월)~11월 20일(금)
서면평가 및 대표자 면담	11월 4주~12월 1주
결과작성 및 조정	12월 1주~2주
결과판정 및 심의	12월 2주~4주
지정결정 통보	12월 5주

※ 상기 일정은 정책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IX. 기타 유의사항

- 지정·평가 신청접수가 완료된 기관은 지정·평가 진행 과정 중 기관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기관명 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 양도·양수, 교습 정지 명령 이상의 행정처분 등)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평가원에 보고*해야 함.

* 평가원에 보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훈련기관에 있음.

X. 담당자 연락처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지정평가팀(지정·평가 업무 담당)
 - 전화번호: 1833-6230(내선 2번), 전자우편: nee@kabone.or.kr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1762